

계좌간 자동이체 약관

제 1 조 자동이체 방법

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, 수표,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입금계좌에 넣으면, 이체처리결과는 별도 통지없이 통장에 기입한다.

제 2 조 지급자금부족 때의 처리

이체지정일(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)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한다.

제 3 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

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, 이체처리 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4 조 증권의 부도

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,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한다.

제 5 조 신청 내용의 변경·해지 신고

거래처가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지정일 2일 전까지 은행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.

제 6 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 때 처리

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채무 등 이체대상 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한다.

제 7 조 준 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, 관련예금, 신탁약관 및 은행 내규를 준용한다.